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6. 14 선고 2020가단1072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64,198원과 그중 43,563,617원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20. 5. 15.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5. 6.까지 각 연 9%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19. 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3,564,19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중복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돈 중 43,564,198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2. 1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하에서 주식회사를 호칭할 때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

1) 원고는 2016. 4. 28. 피고 A와 사이에 F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21. 4. 2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G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이 위 가항 기재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9. 7. 28.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9. 30. G은행에 위 가항 기재 대출원리금 43,967,104원(= 원금 43,750,009원 + 이자 217,0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원고가 위 대위 변제로 피고 A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9. 9. 30.부터 여러 차례 1) 에 걸쳐 피고 A으로부터 합계 403,487원을 회수하였고, 위와 같이 회수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9. 30.부터 각 상환일까지 581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1) 한편, 피고 A은 2015. 6.경부터 피고 C에 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와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8. 12.경 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의 요청에 의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물품대금채무와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A은 2019. 2. 11.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9. 2. 12. 접수 제738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 A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2017. 2.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3. 31. 접수 제20841호로 채권최고액 4,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4)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부동산임의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E(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된 결과 H, I, J 앞으로 2020. 10. 26.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2020. 12. 9. 열린 배당기일에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 중 170,339,284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3,564,198원(= 대위변제 원금 43,967,104원 - 변제액 403,487원 + 확정지연손해금 581원)과 그중 43,563,61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로서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20. 5. 15.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5. 6.까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율인 연 9%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764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F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2016. 4. 28.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 7. 2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19. 9. 30. K은행에 피고 F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는바,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재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지가(토지), 시가표준액(건물)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액이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198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 C이 2019. 2. 11. 피고 A에 대하여 이미 발생해 있던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2. 채권최고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9. 9.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4,510,770,860원(=토지 1,971,500,000원 + 건물 2,539,270,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감정기준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2. 11. 무렵에도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100,000,000원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으로 근저당권자인 L유한회사의 배당액을 2,859,831,592원, 위 중소기업은행의 확정채권 일부대위변제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의 배당액을 648,416,754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수는 위 배당액을 하회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4,510,770,860원은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508,248,346원(= 2,859,831,592원 + 648,416,754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피고 A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고 있지 못하고 있던 중 변제기 연장을 위한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3,564,19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판결,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피보전채권 43,564,198원 부분을 양도하고, 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필

별지

1) 2019. 9. 30. 360,280원, 2019. 10. 22. 14,366원, 2019. 11. 12. 19,532원, 2019. 12. 26. 9,309원